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이 심의하여 접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할 수 있도록 「남북협력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46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남북협력기금계정에 기부금 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계정 신설(안 제13조제2항제3호)

민간 기부금을 기탁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계정을 신규 설치하고 접수된 기부금을 별도 적립하도록 함.

나. 기금 수입의 종류에 ‘기부금’ 추가(안 제14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부금계정: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

제14조제1항 중 “출연금”을 “출연금, 기부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) ① (생략)	제13조(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3. 기부금계정: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
제14조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 기금은 출연금, 차입금, 회수금, 제2조에 따른 수입금,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,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.	제14조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----- ---- <u>출연금, 기부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2100 - 5744